

1. 개정 이유

『국가유산기본법』 일부개정으로 기존의 문화·자연·무형유산위원회 및 시·도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·개편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, 영향진단의 관계 전문가 자격요건 중 교원의 범위를 재직하였던 교원까지 포함·확대하여 유존지역 평가 관계 전문가와 일치,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, 시·도문화유산위원회 및 시·도자연유산위원회 명칭 변경 (안 제4조 제3항 제4호)

- 『국가유산기본법』 개정에 따라 국가유산영향진단의 매장유산 유존지역평가하는 위원회 명칭을 “문화유산위원회” 또는 “시·도문화유산위원회” 및 “자연유산위원회” 또는 “시·도자연유산위원회”에서 “국가유산위원회” 및 “시·도유산위원회”로 변경

나. 영향진단 중 영향검토의 관계전문가 자격 요건 확대(안 제4조 제4항 제1호)

- 관계전문가 자격 요건 중 “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”을 “국가유산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을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원”으로 함

다. 제16조제4항제3호 누락에 따른 조문번호 수정(제16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4호 가목중 “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또는 제71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시·도문화유산위원회”을 “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9조의2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·도자연유산위원회”을 “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·도유산위원회”으로 한다.

제4조제4항제1호 중 “국가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”을 “국가유산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을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원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) ① · ② (생략)	제4조(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유존지역평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실시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	4. ----- ----- -----
가.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또는 제71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시·도문화유산위원회	가.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9조의2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
나.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 또는 제41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 또는 시·도자연유산위원회	나.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·도유산위원회
④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	④ -----

<u>4.</u> ~ <u>6.</u> (생략) ⑤ · ⑥ (생략)	<u>3.</u> ~ <u>5.</u> (현행 제4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)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--	--